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운송사업자 면허 상속 신고기간 연장 근거 신설 >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11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제2207711호) ····· 1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운송사업자 면허 상속 신고기간 연장 근거 신설(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 3

※ 참고자료 ····· 9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2207711)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기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22
3. 회 부 일 : 2025. 1. 2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직접 사업을 승계할 수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어 희망일자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시·군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양수 수요가 적어 상속인이 면허를 양도할 의사가 있음에도 양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사업을 승

계하기 위하여 뒤늦게 상속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 기한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속의 신고 기한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운송사업자 면허 상속 신고기간 연장 근거 신설(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신고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내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고기간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간을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 기한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1],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요건을 갖추어 상속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기간에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됨[2]. (참고1. 참조)

이에 따라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경우 상속인이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용 운수종사경력 요건(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체요건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을 이수해야

1)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되는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상속은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실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법규의 적용대상은 대부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임.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하는데[3], 2024년 1년간 양수교육 이수 인원이 8천명이 넘고, 분기별(3개월 단위) 추첨제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체계에서 매분기 경쟁률이 평균 3대 1을 넘고 있어[4] 법정 상속 신고기간(90일)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임.(참고2. 참조)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그 외에도 상속인이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다수의 상속인 중 개인택시 면허 상속인을 결정하는 문제 등으로 법정 상속 신고기간(90일)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5].

한편, 2024년 12월 기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165,081명 중 65세 이상이 88,616명(53.6%), 70세 이상이 42,009명(25.4%)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개인 택시 운수종사자 연령별 현황('24.12월 기준) >

(단위: 명)

구분	전체	40대 이하	50대	60 ~ 64	65 ~ 69	70 ~ 74	75 ~ 79	80대 이상
개인 택시	165,081 (100%)	8,406 (5.1%)	30,638 (18.6%)	37,421 (22.7%)	**46,607 (28.2%)**	**30,100 (18.2%)**	**10,189 (6.2%)**	**1,720 (1.0%)**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국토교통부)

앞서 살펴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이행에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4)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 실시) 신청 현황

구 분		모집정원	신청인원	경쟁률	비고
2024년	4분기(10~12월)	2,016	7,114	3.5대 1	평균 경쟁률 3.1대 1
2025년	1분기(1~3월)	2,752	7,149	2.6대 1	
	2분기(4~6월)	2,624	8,088	3.1대 1	

* 2024년 4분기부터 전면추첨제 실시, 그 전에는 선착순 운영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5) 개인택시연합회에 따르면, 개인택시면허 상속 신고기간을 미준수하는 주요 사유는 상속자의 관련규정 미인지, 지역 내 개인택시 양수 수요 부족, 개인택시 상속순위 미결정, 상속인 부존재 등임.

절반 이상이 고령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을 현행 90일에 추가하여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보다 상속 신고기간을 최대 180일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상속 신고기간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15조제7항[6]에 따라 법정 상속 신고기간과 동일한 90일 이내에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므로[7], 개정안에 따라 상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양도기간도 동일기간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7) 상속인이 면허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90일 이내에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지도 아니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다. 국토교통부 의견

상속신고 기간을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최대 180일(6개월)까지로 하여 지방 실정에 맞게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함. 다만, 정당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신고기한을 설정하기 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1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도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 최근 5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1항제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상속 신고기간 미준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

연도	시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납부건수	납부금액
2019년	서울	4	12,500,000	4	12,500,000
2021년	서울	4	13,000,000	4	13,000,000
2022년	경기	1	2,500,000	1	2,500,000
	경남	1	2,500,000	1	2,500,000
2023년	서울	1	2,500,000	1	2,500,000
	인천	2	5,000,000	2	5,000,000
	경기	1	2,500,000	1	2,500,000

출처: 전국 지자체 취합(2024.9)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 2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신청 현황

○ 모집 정원 대비 교육 신청 현황('24.1월~'25.6월)

구분		모집정원	신청현황	교육이수	모집방식	비고
'24년	1~3월	2,240명	7,042명	8,053명	선착순	3개월 단위
	4~6월	2,016명	6,000명		선착순	3개월 단위
	7~9월	1,856명	6,569명		추첨+선착순	3개월 단위
	10~12월	2,016명	7,114명		전면추첨제 (추첨가점제 시행)	3개월 단위
	12월 추가모집	96명	507명			추가모집
	계	8,224명	27,232명		-	-
'25년	1~3월	2,752명	7,149명	5,376명 (예정 9,560명)	전면추첨제	3개월 단위
	4~6월	2,624명	8,088명		전면추첨제	3개월 단위
	계	5,376명	15,237명		-	-

* '24년 상반기 교육접수는 '선착순'으로 운영되어 접수기간 내 '접속자(명)'으로 집계함

** '24.4월 교육희망자 약 9,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80% 이상 기존 접수방식 개선 희망'**

< 교육접수 방식 개선 개편 과정 >

기존	⇨	3분기 접수('24.6월)	⇨	4분기 접수('24.9월)	⇨	'25년 1분기 접수('24.12월)
선착순제 100%		추첨제 50%+선착순제 50%		전면추첨제(100%)		추첨가점제 도입

* 추첨가점제 : '25년1분기 교육과정부터 '낙첨' 횟수에 비례하여 가점을 부여, 약 1년 이내 당첨 확률 90% 이상 예상(1년간 한시적 시행)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